

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 ②

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.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,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. 이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.

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.

본지는 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호부터 연재한다. [편집자 주]

<p>글 쓰는 순서</p> <p>I. 건설업 관련 주요 민원 신고사항 ... 지난 호</p> <p>II. 건설관련 법령 벌칙규정 이번 호</p> <p>1. 벌칙의 종류</p> <p>2.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벌칙</p> <p>1) 건설업의 등록, 영업범위 및 신고사항</p>	<p>2) 건설공사도급 및 하도급 계약</p> <p>3) 건설공사시공 및 기술관리 다음 호</p> <p>4)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입찰질서 문란행위 등</p> <p>5) 건설기술관리법 등 타법령 및 기타사항</p> <p>6) 양벌규정</p>
--	--

II. 건설관계 법령 벌칙규정

1. 벌칙의 종류

- 행정벌
 - 행정형벌 : 징역, 벌금(형사소송법 절차)
 - 과태료 : 행정기관부과, 비송사건절차법
- 행정처분
 - 등록말소
 - 영업정지
 - 과징금
 - 자격취소, 정지

1) 행정벌

의 의	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.	
종 류	행정형벌	징역·벌금-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함 예) 무등록시공, 건설업등록대여, 일괄하도급 등
	과 태 료	행정법상의 의무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제재(금전벌의 일종)-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하며 이의제기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절차에 의함 예) 건설업기재사항변경 미신고, 건설공사대장 미비치 등
기 타	과태료는 등록수가 아닌 법인(자연인)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라 부과	

2) 행정처분

의 의	행정주체가 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를 말한다.	
종 류	등록말소	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 (건설산업기본법상) 예) 건설업등록을 허위로 한 자,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등
	영업정지	도급계약의 체결은 물론 입찰·견적 등 도급계약의 부수적 행위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 (건설산업기본법상) 예)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, 건설업 영업범위 위반 등
	과 징 금	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예) 건설공사 하도급제한 위반, 하도급계약의 허위통보 등
기 타	행정벌과 행정처분은 동시에 처벌이 가능함	

3) 처벌절차

- 징역과 벌금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확정·집행되고 과태료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부과·징수함
- 등록취소·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시·도지사가 청문 등의 절차를 밟아 처분함

영어 유머

A lie-detector – 거짓말 탐지기

“You know, the lie-detector is a marvelous scientific invention. Have you ever seen one?”

“Seen one? I’ve married one!”

“거짓말 탐지기 있잖아, 거 참 희한한 발명품이란 말이야. 자네 어디 구경한 적 있나?”

“구경했냐고? 난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다네!”

「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」 중에서

2.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벌칙

1) 건설업의 등록, 영업범위 및 신고사항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① 무등록시공 등 ■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	법제9조제1항 법제96조제1호	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②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■ 건설업등록 주기적(갱신)신고를 허위로 한 자 ■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업등록 주기적(갱신)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■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해당	법제9조 법제83조제1호 법제9조제4항 법제83조제1호의2 법제9조제4항 법제81조제2호의2 법제83조제6호 법제10조 법제83조제2호 법제13조제1항 법제83조제3호	• 등록말소 • 등록말소 • 시 정 명 령 또는 시정지시 • 등록말소 •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 • 등록말소
③ 건설업의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	법제17조 법제96조제3호	•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• 등록말소
④ 건설업 등록 등의 대여금지 위반 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의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건설업자 및 상대방	법제21조 법제83조제5호 법제96조제4호	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⑤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■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■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	법제16조 법제82조제2항제1호	• 영업정지 8월 또는 도급금액 30/100이하의 과징금
⑥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	법제83조제8호	• 영업정지 6월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⑦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아니한 자	법제9조의2제2항 법제100조	• 과태료 50만원
⑧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위반행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■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	법제49조제1항 법제81조제7호 법제49조제1항 법제99조제8호	• 시정 명령 또는 시정지시 •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 • 과태료 150만원
⑨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	법제83조제10호	•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
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	법제83조제11호	• 등록말소

2)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① 도급계약의 성실의무 위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	법제81조제2호 법제82조제1항제4호	•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•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(시정명령·지시 불이행시)
② 원·하도급 서면계약서 작성, 교부의무 위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내용,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,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,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, 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	법제22조제2항 법제99조제2호 법제99조제2호	• 과태료 150만원 • 과태료 50만원
③ 건설공사대장 비치의무 위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 대장을 주된 영업소 	법제22조제3항,	• 과태료 100만원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<p>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발주자에게 미통보·허위통보 한 자 	<p>제4항 법제99조제3호 법제99조제3호의2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태료 100만원
<p>④ 건설공사 하도급제한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☞ 일괄하도급 <p>-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</p> <p>-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 한 때 ☞ 무등록 하도급 ■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☞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■ 하수급인이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(단,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제외) ☞ 재하도급 <p>-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하도급한 때</p> <p>-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</p>	<p>법제29조제1항 법제82조제2항제2호 법제96조</p> <p>법제82조제2항제2호</p> <p>법제82조제2항제2호</p> <p>법제29조제2항 법제82조제2항제2호</p> <p>법제29조제3항 법제82조제2항제2호 법제96조</p> <p>법제29조제4항 법제82조제2항제2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/100 이하의 과징금 •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• 영업정지 8월또는 하도급금액의 30/100 이하의 과징금 • 영업정지 6월또는 하도급금액의 24/100 이하의 과징금 • 영업정지 6월또는 하도급금액의 24/100 이하의 과징금 • 영업정지 4월또는 하도급금액의 16/100 이하의 과징금 • 영업정지 6월또는 하도급금액의 24/100 이하의 과징금 • 영업정지 4월또는 하도급금액의 16/100 이하의 과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무하도급 위반 (2004. 12. 31 삭제, 2008. 1. 1 시행) <p>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위반 (2004. 12. 31 신설, 2006. 1. 1 시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(30억원) 미만 및 비율(100분의 30)의 이상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을 도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<p>⑥ 하도급계약 통지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체결 내용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■ 이중계약 등 편법으로 발주관서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허위로 통지한 경우 <p>⑦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(어음인 경우 어음만기일)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치 않은 경우 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<p>⑧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이를 조정지급하지 않은 자 <p>⑨ 검사 및 인도의무 불이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 10일 이내 	<p>법제30조제1항 법제82조제2항제3호</p> <p>법제28조의2제1항 법제82조제2항제1호의2</p> <p>법제28조의2제2항 법제99조제4호</p> <p>법제29조제5항 법제99조제5호 법제29조제5항 법제82조제1항제3호</p> <p>법제34조 법제81조제5호 법제82조제1항제4호</p> <p>법제36조 법제81조제5호 법제82조제1항제4호</p> <p>법제37조</p>	<p>징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2월 또는 하도급금액의 8/100 이하의 과징금 • 영업정지 6월 또는 공사도급금액의 24/100 이하의 과징금 • 과태료 150만원 • 과태료 150만원 •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•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•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 •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•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 • 시정명령 또는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<p>검사를 하여야 하고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</p> <p>⑩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<p>⑪ 부정청탁에 의한 재산상 이익취득 및 공여금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, 수급인,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수액에 따른 세부처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억원 이상인 때 -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-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- 1천만원 미만인 때 <p>⑫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</p>	<p>법제81조제5호 법제82조제1항제4호</p> <p>법제38조 법제81조제5호 법제82조제1항제4호</p> <p>법제38조의2 법제83조제12호 법제95조의2</p> <p>법제47조제2항 법제82조제2항제4호</p>	<p>시정지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 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•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 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• 영업정지 8월 • 영업정지 6월 • 영업정지 4월 • 영업정지 2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6월 또는 도급금액 24/100 이하 과징금



건강 상식

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영양가가 더 높을까?

흰색 암탉은 흰색 달걀, 갈색 암탉은 갈색 달걀을 낳을 뿐, 맛과 영양가는 차이가 없다. 단, 갈색 암탉은 흰색 암탉보

다 약간 덩치가 크기 때문에 모이도 좀 더 많이 먹는다.

「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」 중에서